

보도시점 2024.12.20.(금) 16:00 / 배포 2024.12.20.(금) 08:30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25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의결 및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 결혼준비대행업 제도개선 사항 및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 논의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12.20.(금) 15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 (의결안건) ①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②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③ 2024년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보고안건) ④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
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하여 내년도 소비자 정책 추진 및 환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①육상레저시설 안전 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 마련, ②연소형 방향제 주의사항 표시기준 개선, ③집합건물 분양자 의무 규정 마련, ④알뜰폰 해지 절차 마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 및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 통칭 '웨딩플래너'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개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결혼준비 일정을 관리함

이번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안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 1.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17개)과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안)을 의결하였다.
- 2025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①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 확보, ②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③취약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④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총 166개(중앙행정기관 89개, 광역지방자치단체 77개) 과제를 담고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 ▲IoT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고, ▲환경 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아울러 취약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소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과제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 ▲취약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친화적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안전 2.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동 지침의 붙임 서식 중, ‘평가결과 통보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데 변경된 지표*를 반영하였다.

* (예) ‘평가결과’의 환류’ 지표를 추가하고, 기존의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지표를 ‘추진계획의 적절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지표로 분리

- 이번 개정된 평가 지침을 통해 소비자정책 평가의 효과성 및 환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의 추진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안건 3. 2024년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 ① (육상레저시설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 마련) 최근 번지점프, 집라인 (Zip Line, 하강시설) 등 육상레저스포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육상레저스포츠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관한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 하도록 권고하였다. (문체부)
- ② (연소형 방향제 주의사항 표시기준 개선) 향초 등 연소형 방향제는 연소 시 초미세먼지, 독성물질 등을 생성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소비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소형 방향제에 대해 환기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하였다. (환경부)
- ③ (집합건물 분양자 의무규정 마련) 현행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나,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분양자(시행사)가 집합건물을 관리한다. 현행법상 분양자는 관리인과 동일하게 건물관리 권한을 가지고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집합건물의 분양자는

관리인과 달리, 관리비 공개, 회계감사 등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아, 장기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집합건물에서는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분양자가 보고의무, 회계감사 등 규정을 적용받는 것과 대조됨

- 이에 집합건물에 장기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분양자도 비용 보고, 회계감사 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법무부)

- ④ (알뜰폰 해지절차 마련) 현재 알뜰폰 이용자들이 해지를 하려는 경우,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련 지침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업자 준수사항 등 이용자 해지에 관한 절차를 추가 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과기부)

< 안건 4.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한 불편사항들이 예비 부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업계 현황 및 소비자 피해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 우선,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 현재는 예상치 못한 추가금,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동 분야는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 앞서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하여,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상위 18개사)의 불공정약관*을 이미 시정한 바 있다.

* 추가요금 가격 범위 및 위약금 기준 명확화, 위약금 기준 합리화 등(24.11.13. 공정위 보도자료 참조)

-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하여, 지난 '24.12.10.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서비스별 가격 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자들은 '25년 1월부터 가격정보를 자사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 안건 5.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 >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최근 광고 대행사가 SNS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 이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신고센터와 조정기관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개별사건 조정·소송 지원 등에 그치고, 경찰 수사 등 법 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25년부터는 공정위, 과기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 (TF)'이 운영될 계획이다.
 - 동 TF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의 수사 의뢰를 담당하는 법률지원 분과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소상공인 인식 제고를 담당하는 교육·홍보 분과로 구성되고, '25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광고대행 계약 체결 시, 광고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업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 과기부가 「온라인 소액광고 종합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문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협의하여, '25년 하반기까지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상정안전별 주요 내용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4405)
		담당자	서기관	송 선 (044-200-4406)
			사무관	장민선 (044-200-4407)
			사무관	주진아 (044-200-441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개요

-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년)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차연도 시행계획을 수립 (주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 우리나라의 최상위 소비자정책 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소정위 심의·의결 사항)

< 제6차 기본계획 비전 및 방향 >

- ◆ 비전 :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 ◆ 기본방향
 - 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②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기반 구축
 - ③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2 정책추진 여건

① 국내외 경제 전망

- 국내외 정치 및 통상 환경 불안정, 경기침체 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 확대되어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
- 다만, 시장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폭 확대 등의 국내 소비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을 기대(민간소비증가율 '24년 1.3% → '25년 1.8%)

② 온라인플랫폼 거래 소비자피해의 선제적 예방 중요성 증대

-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플랫폼사업자의 불투명한 자금운용 등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과 다크패턴 등의 기만적 상술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시장감시 강화 및 관련 규제 개선 필요

③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층적 소비자 안전 확보 필요

- 안전 취약계층의 소비자피해 지속, 해외직구 확산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 상품(어린이제품 등) 유통 확산, IoT·융복합 제품(가정용 IP캠 등) 확대 등의 소비환경에 대응 가능한 다층적 소비자 안전 정책 요구

④ 디지털·그린 시대의 대상별 맞춤형 소비여건 개선 요구

- 디지털 시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 강화 및 지속가능한 소비 실천 문화 정착 등을 통해 취약소비자의 소비 여건 개선을 개선할 필요

3 주요 내용

◆ 제6차 기본계획 비전·정책 방향 및 정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총 166개 (중앙행정기관 89개, 광역지방자치단체 77개)의 세부과제를 수립

(1)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안전 확보

- ▲전기차, IoT, 디지털 치료기기 등 신기술 제품안전성 확보, ▲식품 및 교통시설 등 소비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2)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 ▲다크패턴, 부당표시광고, 불공정약관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규제 강화, ▲온라인 거래^{타임프·넥슨 관련} 및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 ▲취약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거래역량 제고를 통한 진입 장벽 완화, ▲소비자친화적 지속가능 소비환경 조성을 통한 그린 소비 참여 활성화, ▲고령소비자 맞춤형 소비자교육 활성화 및 시장확대 노력을 통해 취약소비자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선도

(4)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분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대응 체제 강화, ▲글로벌 협력 및 데이터 기반 소비자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강화

추진전략	대표 과제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안전 확보	▶IoT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안전성 확보 강화 ▶환경유해인자 함유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과기부 환경부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제도 개선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법제도 개선 관련 행위 조사 및 제재	복지부 금융위 공정위
취약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수문 키오스크 U 개발보급을 통한 취약소비자 디지털 이용 여건 개선 ▶디지털점자표시 도입으로 장애인의 식품표시정보 접근성 개선 ▶고령소비자 친화 식품의 확산	과기부 식약처 농식품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실효적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지역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및 지역 맞춤형 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개보위 공정위

< 중앙행정기관 종합시행계획 수립현황 >

추진기관	개수	주요 추진과제	
공정거래위원회	15	· [안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소비자안전 종합관리체계 마련 · [안전] 해외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통한 소비자안전 확보 · [거래]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 [거래] 특수거래 분야 부당행위 감시 강화	(1-1-1-1) (1-2-1-1) (2-1-2-1) (2-1-2-2)
	16	· [안전] 신기술·신유행 적용제품 및 시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안전 감시 강화 · [안전] 온라인 위해제품 신속차단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사고지대 해소 · [거래] 신기술 제품·서비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 · [거래] 소비자정보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 비교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소비활자원 · [피해구제·정책협력] 인공지능 기반 민원처리서비스 개발 및 제공	(1-1-1-7) (1-2-1-4) (2-1-2-4) (2-3-1-3) (4-1-2-3)
기획재정부	1	· [거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	(2-2-1-8)
교육부	1	· [역량] 학교 교육에서 소비자교육 활성화	(3-1-2-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6	· [안전] IoT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안전성 확보 강화 · [피해구제·정책협력]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해결기능 개선	(1-1-1-3) (4-1-1-2)
문화체육관광부	2	· [안전] 문화·체육·관광시설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 · [거래] 게임콘텐츠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보호	(1-1-3-4) (2-2-1-3)
농림축산식품부	5	· [안전] 농축산물의 안전 및 원산지 관리 강화 · [역량] 고령소비자 친화 식품의 확산	(1-1-2-1) (3-1-1-6)
산업통상자원부	8	· [안전]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안전] 온라인 쇼핑몰 내 불법·리콜 제품의 유통차단 · [안전] 고령자·장애인용품 안전기준 도입 필요성 검토 · [역량]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제도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 촉진	(1-1-1-6) (1-2-1-2) (1-3-2-3) (3-2-2-3)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3	· [거래]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	(2-2-2-3)
환경부	6	· [안전] 생활화학제품 관리 선진화 · [안전] 환경유해인자 함유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 [역량]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구매접근성 강화 · [역량] 수리권, 다화용기 선택권 보장 등 자원순환 소비 실천여건 개선	(1-1-3-2) (1-3-2-5) (3-2-1-5) (3-2-1-7)
		· [안전] 전기차 및 관련부품, 시설에서의 소비자안전 확보 · [안전] 전기, 수소차 충전기 구축 등 무공해차 이용 여건 개선	(1-1-1-4) (3-2-1-1)
국토교통부	4	· [안전] 전기차 및 관련부품, 시설에서의 소비자안전 확보 · [안전] 전기, 수소차 충전기 구축 등 무공해차 이용 여건 개선	(1-1-1-4) (3-2-1-1)
해양수산부	1	· [안전] 수산식품의 안전 및 원산지 관리 강화	(1-1-2-3)
행정안전부	1	· [안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제도 확산	(1-3-2-2)
중소벤처기업부	1	· [역량] 소상공인의 온라인 활용역량 제고 통한 소비자참여 기회촉진	(3-2-1-4)
방송통신위원회	5	· [거래] 앱마켓, 메타버스 등 디지털 산업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	(2-2-1-4)
금융위원회	4	· [거래]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2-2-1-2)
		· [거래] 지급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	(2-2-1-9)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4	· [거래] 온라인서비스 개인정보 침해 점검 및 시정 강화 · [역량]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이해력 교육 강화	(2-1-1-1) (3-1-1-1)
식품의약품안전처	6	· [안전] 다소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안전]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극 발굴 및 정보 공개로 안전 소비 지원 · [역량]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정적 정착으로 탄소중립 실천	(1-1-2-2) (1-2-1-3) (3-2-1-3)
합계	89		

1 개요

- 소비자정책의 추진성과를 높이고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을 개정
 - 국무조정실 개별평가 관리·지원 제도의 실효성 보완 기조*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식·지표 개선, 서식 재정비 등을 통해 평가 실효성 제고
 - *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평가항목 및 지표 체계 구성, 평가결과 환류 강화 등

2 주요 내용

- 평가방식·지표 개선을 통한 평가결과 통보서 등의 서식 개정
 - (평가방식) 사·도의 자율적 소비자정책 추진 유도 및 우수과제 적극 발굴·확산을 위해, 평가 대상과제를 정책영역별 대표과제*로 한정
 - * 제6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부터 사·도 평가는 전수평가에서 선별평가로 전환
 - (평가지표) 소비자정책의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및 사·도의 평가지표 개선

<평가지표 주요 개선 내용>

- ◆ 과제 추진 성과 제고 및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해 '성과' 항목을 '성과·환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류 지표 신설 등 배점 강화
 - 평가결과 환류 강화 유도를 위해 '성과' 평가항목에 '평가결과의 환류' 지표 신설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지표를 '계획' 평가 항목에서 '성과' 평가 항목으로 이동 등 지표 구성 체계 정합성 제고
- ◆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지표의 분리 등 지표명 및 지표 정의 명확화 등

- 사·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방식 변경, 중앙부처 및 사·도 지표 개선 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

◇ 소정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고시 등에 대해 개선 권고(소비자기본법 § 25②)

- ▶ 제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08.10월)에서 논의되어 '09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 공정위, 소비자원·소비자단체 건의, 대국민공모 등을 통하여 예비과제 발굴(~10월)
→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검토(~11월) 등을 거쳐 안건 상정

1 육상레저시설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번지점프, 집라인 등 육상레저시설은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큼에도 이와 관련한 안전기준 및 법령 등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 **(권고)** 번지점프, 집라인 등 사고 위험이 큰 육상레저시설과 관련한 안전기준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

2 연소형 방향제 주의사항 표시기준 개선 (환경부)

- **(현행)** 향초나 인센스 등 연소형 방향제는 연소 시 초미세먼지 및 독성물질 등을 생성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에도 환기 관련 주의사항 표시의무가 없어 소비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권고)** 소비자가 연소형 방향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기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

3 집합건물 분양자 의무 규정 마련 (법무부)

- **(현행)** 집합건물은 관리인 선임 전까지 분양자가 관리비 징수를 함에도 공동주택과 달리 보고의무, 회계감사 및 지자체 감독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장기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의 피해 발생 소지
- **(권고)** 집합건물에 장기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분양자도 비용보고, 회계감사 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선

4 알뜰폰 해지 절차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행)** 대다수의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쉽게 해지를 할 수 없도록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불편·불만 발생
- **(권고)**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상 계약해지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등 이용자 해지에 관한 절차를 추가 제시

- ◇ 향후에도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
 - 새로운 유형의 소비시장, 소비자 안전 분야 등에서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제4호-보고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사항

1 추진 배경

- 예비부부들이 겪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불편사항들이 결혼준비 과정상 부담을 가중하고, 결혼 기피 풍토를 촉진하는 등 피해가 심각
 - * 통칭 '웨딩플래너'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개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결혼준비 일정을 관리함
 - '일생에 단 한 번'이라는 명목하에 불공정한 계약조건, 불투명하고 높은 가격을 강요하는 업계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급증

2 과제 추진 내용

1.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및 표준약관 제정

- **(추진배경)** 예상치 못한 추가금·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중이나, 결혼준비대행 분야 표준약관 부재

* '21~'23.4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구제 신청(361건) 중 계약 관련이 93.6%(338건) (소비자원)

- **(정책과제)** 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 등 실태조사^①를 실시(6~12월)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9~12월)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표준약관 제정^② 추진

- ① **[실태조사 주요결과]**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그에 따른 위약금 분쟁(65.3%), 청약철회 거부(18%) 등이 다수를 차지, **피해 발생 주요 원인**은 ▲추가금 등 서비스 비용정보 제공 불충분, ▲불충분한 약관 설명, ▲법률상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약관 규정, ▲해제·해지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 안내 미비 등임
- ② **[표준약관 주요내용(검토중)]** ▲패키지 내 서비스 항목별 세부가격 및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할 의무, ▲사업자 귀책으로 서비스 변경 시 추가 비용 요구 금지, ▲관련 법률상 청약철회권 명시 등

2.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 **(추진배경)** 표준약관이 제정·배포되기에 앞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
- **(정책과제)**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상위 18개)의 불공정약관 시정(11.12)
 - * 추가요금 가격범위 및 위약금 기준 명확화, 위약금 기준 합리화 등

3. 가격정보 공개 업무협약(MOU) 체결

- **(추진배경)** 결혼서비스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서비스별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
- **(정책과제)** 주요 사업자 중심으로 서비스별 가격을 표시하도록 업무협약(12.10)을 맺고, 가격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예비부부의 결혼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3 향후 추진 계획

- **(표준약관)** 제정안 최종 도출 및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배포('25.1분기)
- **(약관시정)** 결혼서비스 분야 불공정약관 여부 심사 및 시정(상시)
- **(가격공개)** 가격정보를 인터넷상(각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에 공개('25.1월부터)

1 추진배경

- 광고 대행사가 SNS 등 온라인 광고 판매 이후, 계약내용 불이행, 환불 거절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사례 증가
 - 관련 신고센터·조정기관이 운영중이나, 개별사건 조정·소송지원에 그치고 경찰 수사 등 법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아 대응방안 마련 필요

2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운영

- **(개요)** 공정위, 과기부, 중기부 등으로 구성되며, TF 내 2개의 분과를 두어 운영
 -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수사의뢰를 담당하는 법률지원분과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소상공인 인식 제고를 담당하는 교육홍보 분과로 구성
- **(향후계획)** 연내 킥오프 회의 개최 후 2025년부터 TF의 분과별 운영*
 - * **(법률지원)**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통해 신고센터 접수 건을 검토하여 수사의뢰 지원, **(교육·홍보)** 필요시 회의 수시 개최 통해 캠페인 등 교육홍보 방안 마련
- **(기대효과)**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소상공인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

3 온라인 광고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 **(개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광고대행 계약 체결 시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표준약관 제정('25년 하반기)
- **(향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온라인 소액광고 종합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문안 마련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표준약관 마련
- **(기대효과)**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수립

- (목적)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 * 소비자보호위원회('82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86년) → 소비자정책위원회('06년)
- (기능)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법 제25조①),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고시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법 제25조②)
 - 기본계획(3년 단위) 및 정책종합시행계획(매년)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공표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비자원장 등
 - (위촉직) 민간공동위원장,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등
- (산하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7개)

소비자정책 위원회	• 위원장(2명)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위원(23명) : 정부위원(간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민간위원 • 기능 :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심의·의결
실무위원회	•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위원 : 관계부처의 차관·차장·부위원장, 한국소비자원장 • 기능 : 소정위 상정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 소정위 운영지원
전문위원회	• 위원장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 위원 : 관계부처 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원 임원, 민간위원 • 기능 : 소정위 상정 안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연구·검토 • 구성 : 7개 분야 및 관계부처 * 공산품, 식의약품,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교통, 방송통신, 일반

붙임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① 당연직·정부위원 (10명)

연번	소속·직위	비고
1	국무총리	위원장
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국토교통부장관	
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간사위원
10	한국소비자원장	

② 위촉직·민간위원 (15명)

연번	성명	소속·직위	비고
1	김성숙	계명대학교 교수	공동위원장
2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3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	
4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5	임종한	인하대병원 교수	
6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7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8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9	문은숙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	
10	이영애	인천대학교 교수	
11	노홍인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12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3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14	고흥석	군산대학교 교수	
15	나종연	서울대학교 교수	